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2024.12.9.)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보건소 소관]

◆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 개요	1
II	2025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III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6
	① 세입·세출 총괄 현황	
	② 일반회계 세입현황	
	③ 일반회계 세출현황	
	④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⑥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현황	
IV	2025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8
V	검토결과(검토의견)	19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159 24-160
----------	------------------

I. 제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 나. 제 출 일 : 2024. 11. 15.
- 다. 회 부 일 : 2024. 11. 18.

2.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나.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I. 2025년 마포구 예산 편성 현황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마포구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Delta 0.48\%$ 감소한 총 8,371억9,374만4천원이며, 재정자립도¹⁾는 29.14%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으며, 재정자주도²⁾는 45.59%로 전년대비 0.91% 높아졌음.
 - 일반회계는 8,051억1,294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함.
 - 특별회계는 320억8,079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Delta 23.14\%$ 감소함.
- 기금운용계획안은 832억 원으로 전년대비 $\Delta 238$ 억원이 감소함

1)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재원 + 보조금 제외한 의존재원(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일반회계 총규모

가. 2025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25 예산액	2024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37,193,744	841,264,536	△4,070,792	△0.48%
일반회계	805,112,945	799,525,079	5,587,866	0.70%
특별회계	32,080,799	41,739,457	△9,658,658	△23.14%
의료급여기금	663,164	580,000	83,164	14.34%
마포농수산물시장	6,558,857	6,323,221	235,636	3.73%
주차장	23,693,459	28,508,249	△4,814,790	△16.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69,848	5,579,977	△5,010,129	△89.79%
건축안전	595,471	748,010	△152,539	△20.39%

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①=②+③-④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⑤	증 감 ⑥=⑤-①
		수입②	지출③		
합 계	102,952,716	23,217,365	32,246,616	93,923,465	△9,029,251
1 남북교류협력기금	615,428	28,746	79,500	564,674	△50,754
2 고향사랑기금	228,050	140,828	0	368,878	140,828
3 재난관리기금	5,825,427	2,043,364	429,440	7,439,351	1,613,924
4 자활기금	1,656,632	70,500	72,640	1,654,492	△2,140
5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563,586	321,563	318,182	566,967	3,381
6 양성평등기금	2,203,302	59,000	81,600	2,180,702	△22,600
7 중소기업육성기금	5,238,825	3,457,809	5,000,800	3,695,834	△1,542,991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140,472	8,879,894	19,864,598	26,155,768	△10,984,704
9 공유재산관리기금	31,920,129	1,752,007	223,901	33,448,235	1,528,106
1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906,417	47,824	42,600	911,641	5,224
1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125,533	150,965	149,329	1,127,169	1,636
12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9,547,287	4,329,886	3,180,331	10,696,842	1,149,555
13 옥외광고발전기금	1,313,796	345,000	295,400	1,363,396	49,600
14 도로굴착복구기금	2,408,519	1,419,029	1,904,600	1,922,948	△485,571
15 식품진흥기금	2,259,313	170,950	603,695	1,826,568	△432,745

2. 세입·세출예산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5,112,945	799,525,079	5,587,866	0.70%
지방세수입	171,255,862	162,122,106	9,133,756	5.63%
세외수입	63,375,090	61,569,753	1,805,337	2.93%
지방교부세	11,536,000	14,678,000	△3,142,000	△21.41%
조정교부금등	120,876,509	118,893,310	1,983,199	1.67%
보조금	357,923,572	354,636,275	3,287,297	0.9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145,912	87,625,635	△7,479,723	△8.54%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32,080,799	41,739,457	△9,658,658	△23.14%
세외수입	23,322,384	22,969,795	352,589	1.54%
경상적세외수입	17,214,830	15,629,264	1,585,566	10.14%
임시적세외수입	42,188	1,434,601	△1,392,413	△97.0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79,400	4,549,400	230,000	5.06%
지난연도 수입	1,285,966	1,356,530	△70,564	△5.20%
보조금	663,164	580,000	83,164	14.34%
국고보조금등	331,582	290,000	41,582	14.34%
시·도비보조금등	331,582	290,000	41,582	14.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95,251	18,189,662	△10,094,411	△55.50%
보존수입등	409,103	17,079,291	△16,670,188	△97.60%
내부거래	7,686,148	1,110,371	6,575,777	592.21%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51억1,294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995억2,507만9천원 보다 0.7%, 55억8,786만6천원 증액 편성됨.

- 지방세 수입은 작년 대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공시지가 상

승, 전세권 및 저당권 설정 증가 등에 의해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증가로 5.63% 증가한 1,712억5,586만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은 감소하는 전망이나, 재산임대수입, 도로점용료와 도로사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증가 및 고금리 영향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93% 소폭 증가된 633억7,509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표준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전년대비 △21.41% 감소된 115억3,600만원임.
- 아울러, 보조금은 약자와의 동행 사업 등 국·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0.93% 증액된 3,579억2,357만2천원임.
-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24년도 예산보다 △23.14%, △96억5,865만8천원 감액된 320억8,079만9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4% 증가된 233억2,238만4천원이고, 보전수입 등내부거래는 특별회계의 잉여금 감소로 전년대비 △55.50% 감소된 80억9,525만1천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5,112,945	100.00%	799,525,079	100.00%	5,587,866	0.70%
인건비	134,817,440	16.75%	128,737,169	16.10%	6,080,271	4.72%
물건비	50,671,881	6.29%	49,091,278	6.14%	1,580,603	3.22%
경상이전	570,617,235	70.87%	554,688,492	69.38%	15,928,743	2.87%
자본지출	41,943,992	5.21%	53,207,559	6.65%	△11,263,567	△21.17%
내부거래	3,248,049	0.40%	3,307,119	0.41%	△59,070	△1.79%
예비비및기타	3,814,348	0.47%	10,493,462	1.31%	△6,679,114	△63.65%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2,080,799	100.00%	41,739,457	100.00%	△9,658,658	△23.14%
인건비	3,090,833	9.63%	3,173,662	7.60%	△82,829	△2.61%
물건비	5,011,367	15.62%	1,955,966	4.69%	3,055,401	156.21%
경상이전	14,455,534	45.06%	16,610,483	39.80%	△2,154,949	△12.97%
자본지출	1,786,379	5.57%	10,809,348	25.90%	△9,022,969	△83.47%
융자및출자	500	0.00%	500	0.00%	0	0.00%
내부거래	7,440,156	23.19%	485,540	1.16%	6,954,616	1432.35%
예비비및기타	296,030	0.92%	8,703,958	20.85%	△8,407,928	△96.60%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8,371억9,374만4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24년도 예산안 대비 0.70%, 55억8,786만6천원 증액된 8,051억1,294만5천원이고,
 - 특별회계는 ‘24년도 예산안 대비 △23.14%, 96억5,865만8천원 감액된 417억3,945만7천원을 편성 요청함.
- 세출예산은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는데,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경직성 예산이 소폭 증가함과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면서 증액한 반면,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면서 예비비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Ⅲ. 보건소 소관 예산 편성 현황

1. 세입·세출 총괄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7,904,786	16,578,642	1,326,144	8.00%
일반회계	17,904,786	16,578,642	1,326,144	8.00%
특별회계	-	-	-	-

- 202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79억47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7,864만2천원 대비 8.00%, 13억2,614만4천원 증가된 규모로서 마포구 전체 세입 예산의 3.43%에 해당함.

나. 세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28,744,314	27,137,574	1,606,740	5.92%
일반회계	28,744,314	27,137,574	1,606,740	5.92%
특별회계	-	-	-	-

- 세출예산은 287억4,431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억3,757만4천원 대비 16억674만원, 5.92% 증가하여 마포구 전체 세출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현황

가.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7,904,786	16,578,642	1,326,144	8.00%
세외수입	178,379	260,997	△82,618	△31.65%
경상적세외수입	91,947	169,437	△77,490	△45.73%
재산임대수입	1,189	1,189	-	0.00%
수수료수입	90,758	168,248	△77,490	△46.0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6,432	91,560	△5,128	△5.60%
과징금	22,692	23,820	△1,128	△4.74%
과태료	63,740	67,740	△4,000	△5.90%
보조금	17,726,407	16,317,645	1,408,762	8.63%
국고보조금등	6,709,275	5,972,357	736,918	12.34%
국고보조금등	6,709,275	5,972,357	736,918	12.34%
시·도비보조금등	11,017,132	10,345,288	671,844	6.49%
시·도비보조금등	11,017,132	10,345,288	671,844	6.49%

- 보건소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 과 ‘세외수입’ 이며 이중 ‘시·도비보조금등’ 은 110억원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의 61.5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 은 1.7억원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의 0.99% 의 비중임.
- 재원별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로 구분되며, 전년 대비 △31.65%, △8,261만8천원 감소되었음. 이는 증지수입 세입 중복 계상에 따른 행정 오류 사항임.
- 보조금은 177억2,640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8.63%, 14억876만2천원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과 서울시 보조사업인 ‘모자보건사업’, ‘임신지원사업’, ‘정신건강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가내시액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총 계	17,904,786	16,578,642	1,326,144
보건행정과	2,624,716	2,114,732	509,984
위생과	555,547	489,350	66,197
건강동행과	14,501,665	13,627,136	874,529
의약과	222,858	347,424	△124,566

-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수수료 감소하였지만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억998만4천원 증액된 26억2,471만6천원임.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정신보건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가내시액 증가분이 반영된 것임.
- 위생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의 가내시액 증가로 전년 대비 6,619만7천원 증액된 5억5,554만7천원임.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내시액의 증가를 반영한 것임.
- 건강동행과는 국고보조금은 감소하였지만, 사업별 기금의 증가와 난임 및 출산 지원 관련 시·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8억7,452만9천원 증가한 145억166만5천원이 편성됨.
- 의약과는 전년 대비 △1억2,456만6천원 감소한 2억2,285만8천원을 편성함. 이는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의 비중 축소와 ‘어른신건강동행사업’ 등의 사업 종료 사유로 국고보조금△1,644만5천원, 기금△928만원, 시도비보조금등△9,88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현황

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8,744,314	100%	27,137,574	100%	1,606,740	5.92%
인건비	4,110,028	14.30%	4,048,457	14.92%	61,571	1.52%
물건비	1,459,997	5.08%	1,584,353	5.84%	△124,356	△7.85%
일반운영비	1,136,847	3.96%	1,199,993	4.42%	△63,146	△5.26%
여비	169,040	0.59%	216,360	0.80%	△47,320	△21.87%
업무추진비	71,710	0.25%	71,640	0.26%	70	0.10%
재료비	82,400	0.29%	96,360	0.36%	△13,960	△14.49%
경상이전	23,040,887	80.16%	21,276,044	78.40%	1,764,843	8.29%
일반보전금	2,005,635	6.98%	1,861,100	6.86%	144,535	7.77%
포상금	7,600	0.03%	24,472	0.09%	△16,872	△68.94%
연금부담금등	420,851	1.46%	372,589	1.37%	48,262	12.95%
배상금등	1,000	0.00%	1,000	0.00%	0	0.00%
민간이전	16,996,853	59.13%	16,376,771	60.35%	620,082	3.79%
자치단체등이전	3,608,948	12.56%	2,640,112	9.73%	968,836	36.70%
자본지출	133,402	0.46%	228,720	0.84%	△95,318	△41.67%
시설비및부대비	22,532	0.08%	55,000	0.20%	△32,468	△59.03%
자산취득비	110,870	0.39%	173,720	0.64%	△62,850	△36.18%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억4,431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674만원, 5.92%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내역은 경상이전의 자치단체등이전이 전년 대비 36.7%, 9억 6,883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이 전년 대비 3.79%, 6억 2,008만2천원 증액 편성함. 반면 여비 예산 감소로 전년대비 △21.87%, △4,732만원 감액되었음. 또한 자본지출의 시설비(△3,246만8천원)와 자산및물품취득비(△6,285만원)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41.67%, △9,531만8천원 감액되었음.

나.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8,744,314	100%	27,137,574	100%	1,606,740	5.92%
보건행정과	4,389,162	15.27%	3,609,176	13.30%	779,986	21.61%
위생과	956,542	3.33%	853,759	3.15%	102,783	12.04%
건강동행과	22,086,091	76.84%	20,971,601	77.28%	1,114,490	5.31%
의약과	1,312,519	4.57%	1,703,038	6.28%	△390,519	△22.93%

다.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

1) 보건행정과

(단위:천원)

부서 · 정책 · 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보건행정과	4,389,162	3,609,176	779,986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4,232,727	3,432,007	800,720
보건소 기능 강화	3,313,807	2,657,617	656,190
통합민원서비스	147,877	161,744	△13,867
건강도시 조성	14,050	8,335	5,715
지역사회건강조사	69,932	69,932	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50,000	332,000	△182,000
암조기검진사업	300,600	286,220	14,380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250,000	254,000	△4,000
건강증진사업관리	8,500	10,000	△1,500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250,000	234,500	15,5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36,884	37,036	△152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1,000	21,000	0
자살 유족 지원사업	52,756	51,080	1,676
정신보건사업	891,080	867,050	24,03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58,128	153,520	4,608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2,000	20,000	2,00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46,000	151,200	△5,200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신규)	795,000	0	795,000
감염병 관리	918,920	774,390	144,530
방역소독	275,451	234,125	41,326
에이즈예방관리	6,660	920	5,740
주요감염병표본감시	213,333	173,050	40,283
국가결핵관리사업	9,780	8,974	806
결핵검진사업	47,392	29,940	17,452

부서·정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감염병예방관리	346,304	307,381	38,923
	말라리아 퇴치사업	20,000	20,000	0
	행정운영경비	156,435	177,169	△20,734
	인력운영비(보건소장실)	44,100	40,205	3,895
	기본경비	112,335	136,964	△24,629

- 보건행정과는 전년 대비 7억7,998만6천원 감소한 43억8,91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15.27%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경상적위탁사업비 7억9,500만원이며, 국(3억9,750만원)·시(1억9,875만원)·구(1억9,875만원) 비율로 편성되었음.
- 주요 증편성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보건소 민원실 키오스크 설치 3,053만원, ‘건강도시 조성’ 건강도시협의회 국외연수비 등으로 571만5천원, ‘암조기검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암검진비 건강보험공단 예탁 관련으로 1,438만원,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371만원, ‘감염병 관리’ HIV 및 에이즈 진료비 지원 및 HIV 진단시약 구매 등 의료 및 회복비 4,138만8천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관리요원 인건비로 4,224만2천원,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 비상방역대책 상황실 냉난방시설 설치 시설비로 2,253만2천원, ‘방역소독’ 예산으로 방역용 특수자동차 구매 및 해충퇴치기 교체비용,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4,53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주요 감편성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일반운영비 △1,079만6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 예탁금인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8,200만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사업’ 경상적위탁사업비 △1,55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520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일반운영비 △260만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6만5천원 등이 감액 편성됨.

2) 위생과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위 생 과	956,542	853,759	102,783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46,559	32,840	13,719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46,559	32,840	13,719
식품공중위생업신고·관리	21,369	19,590	1,779
위생업소 지도점검	7,010	7,010	0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8,540	6,240	2,300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9,640	0	9,640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827,541	701,738	125,803
식품위생 관리	827,541	701,738	125,803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29,271	29,918	△647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75,370	626,220	149,150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신규)	22,900	45,600	△22,700
행정운영경비	82,442	119,181	△36,739
기본경비	82,442	119,181	△36,739
기본경비	82,442	119,181	△36,739

- 위생과는 전년 대비 1억278만3천원 증가한 9억5,65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3.33%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전년도와 단위사업이 동일한 가운데,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관련으로 춤허용업소 비치용 방연마스크 구매와 춤후용업소 대표자 간담회 예산으로 9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3) 건강동행과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건강동행과	22,086,091	20,971,601	1,114,490
지역주민 건강지키기	15,789,334	14,740,196	1,049,138
모자보건관리	6,409,366	5,607,499	801,867
햇빛센터 운영(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120,649	84,171	36,478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27,400	26,534	86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6,000	6,820	△82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0	1,800	△600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2,224,817	2,212,455	12,36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1,644	0	11,644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86,666	93,322	△6,656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29,000	0	329,000
미숙마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9,666	60,318	△10,65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4,600	24,596	4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6,660	7,715	△1,05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24,300	217,600	206,7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	1,542,612	1,414,667	127,945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5,344	1,100	4,244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1,315,931	1,316,564	△633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99,761	0	199,761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6,400	16,792	△10,39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3,200	4,700	△1,500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	2,000	2,000	0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1,516	0	21,516
예방접종사업	6,009,690	5,797,396	212,294
자체예방접종사업	198,594	428,779	△230,185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8,248	27,426	822
국가예방접종 실시	4,471,832	4,462,664	9,168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22,931	30,447	△7,516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288,085	848,080	440,005
생활건강관리	1,204,837	1,221,232	△16,395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96,400	213,120	△16,720
금연구역운영관리	50,420	42,980	7,440
건강증진사업	62,553	75,124	△12,571
영양플러스사업	269,580	251,306	18,274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22,000	22,000	0
건강증진사업관리	315,045	331,006	△15,961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32,109	24,450	7,659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28,927	225,248	3,679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23,103	31,138	△8,035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교육	2,790	2,920	△130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1,910	1,940	△30
방문보건사업	2,165,441	2,114,069	51,372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523,800	1,494,792	29,008
국가치매치료관리비(전환사업)	96,000	77,000	19,00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5,436	4,752	684
재가암환자관리(전환사업)	12,000	12,000	0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51,765	72,502	△20,737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50,100	202,967	47,133
마을건강센터 운영	12,168	12,168	0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14,172	237,888	△23,716
출산가정 지원	3,626,360	3,712,360	△86,000
건강가정지원사업	3,626,360	3,712,360	△86,000
출산장려지원사업	3,626,360	3,712,360	△86,000
행정운영경비	2,670,397	2,519,045	151,352
인력운영비	2,561,878	2,379,361	182,517
인력운영비(금연사업, 마포건강관리센터)	280,822	263,826	16,996
인력운영비(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267,277	0	267,277
인력운영비(서울시 방문간호사)	1,122,715	1,102,087	20,628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891,064	822,914	68,150
기본경비	108,519	139,684	△31,165
기본경비	108,519	139,684	△31,165

- 건강동행과는 전년 대비 11억1,449만원 증가한 220억8,60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76.83%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 편성 내역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1,164만4천원,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3억2,9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억9,976만1천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2,151만6천원, 인력운영비(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로 2억6,727만7천원임.

- 주요 증액 내역은 ‘햇빛센터 운영’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3,590만원,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 지원 1,236만2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 지원사업’ 2억67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2,794만5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4,000만5천원, ‘국가치매치료관리비’ 1,900만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 등 4,71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함.
- 주요 감편성 내역은 ‘자체예방접종사업’ △2억3,018만5천원,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사업’ △764만3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1,065만2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 △751만6천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672만원, ‘건강증진사업’ △907만1천원, ‘건강증진사업관리’ △1,596만1천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2,073만7천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371만6천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함.

4) 의약과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의약과	1,312,519	1,703,038	△390,519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공동체 실현	804,259	1,110,092	△305,833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387,995	506,672	△118,677
아현보건지소 운영	103,626	123,102	△19,476
건강증진사업관리	67,000	87,600	△20,600
의료기관 관리	8,560	7,247	1,313
의약품 조제·투약	3,280	4,780	△1,500
치아건강관리	143,382	150,948	△7,566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11,520	11,520	0
서강보건지소운영	50,627	15,806	34,821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07,814	471,380	△163,566
건강검진	12,260	13,120	△860
검사 및 검진사업	186,728	310,170	△123,442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56,000	64,000	△8,000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6,590	16,590	0
의약품 안전관리	2,880	2,880	0
재활보건사업	33,356	64,620	△31,264
응급의료관리	108,450	132,040	△23,590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62,450	85,540	△23,09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12,000	12,500	△500
구민 헌혈 장려 사업	34,000	34,000	0
행정운영경비(의약과)	508,260	592,946	△84,686
인력운영비(의약과)	406,770	459,595	△52,825
인력운영비(응급의료관리)	85,778	42,540	43,238
인력운영비(아현보건지소 운영)	161,523	175,016	△13,493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운영)	45,132	42,121	3,011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38,544	40,170	△1,626
인력운영비(의약품 안전관리)	75,793	75,144	649
기본경비(의약과)	101,490	133,351	△31,861
기본경비	101,490	133,351	△31,861

- 의약과는 전년대비 △3억9,051만9천원, 감액편성하여 13억1,25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전체 예산 중 4.57%를 차지하고 있음.
- 의약과 신규 편성 내역은 ‘의료기관 관리’ 사업예산 중 연휴진료 대책반 당직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서강보건지소운영’ 사업예산 중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400만1천원과 같은 사업예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장애인자조모임) 행사운영비 30만원과 같은 사업예산 재활의료 소모품 의료 및 회복비로 200만원, ‘검사 및 검진사업’ 예산 중 부작용 등 환자 보상비로 기타보상금 100만원,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사업예산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 강사비와 일반교육 강사비로 행사운영비 4,815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 내역은 ‘신규 편성을 제외하면, ‘인력운영비(응급의료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시간선택제임기제 기타직보수로 4,323만8천원과 ‘인력운영비(서강보건지소 운영)’ 서강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타직보수로 301만1천원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 내역은 ‘아현보건지소 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2,615만6천원,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이 전년 대비 △2,060만원, ‘검사 및 검진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억2,344만2천원, ‘재활보건사업’ 재활보건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 대비 △3,126만4천원, ‘인력운영비(아현보건지소 운영)’ 이현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 기타직 보수가 전년 대비 △1,349만3천원 감액 편성함.

4.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 없음

5.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없음

6.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 없음

IV. 2025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

가.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259,313	170,950	603,695	△432,745	1,826,568	

나. 자금운용(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수 입 합 계	2,430,263	2,777,459	△347,196
세외수입	145,950	123,580	22,370
경상적세외수입	145,950	123,580	22,370
징수교부금수입	42,900	34,800	8,100
이자수입	103,050	88,780	14,2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84,313	2,653,879	△369,566
보전수입등	2,284,313	2,653,879	△369,566
융자금원금수입	25,000	18,750	6,250
예치금회수	2,259,313	2,635,129	△375,816

2)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지 출 합 계	2,430,263	2,777,459	△347,196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603,695	620,595	△16,900
식품진흥활동(식품진흥기금)	603,695	620,595	△16,900
식품진흥기금 운용	603,695	620,595	△16,900
재무활동(위생과)	1,826,568	2,156,864	△330,296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826,568	2,156,864	△330,296
여유자금예치	1,826,568	2,156,864	△330,296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금으로서 재원은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등으로 조성되며,
- 주요 지출은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대비 △1,690만원 감액한 6억1,956만5천원, ‘여유자금예치’로 전년도 대비 △3억3,029만6천원 감액한 18억2,656만8천원을 편성함.

V. 검토결과

□ 검토의견

- 2025년도 마포구 예산안 편성방향
- 세입예산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임에 따라 지방세 공시지가 상승 등에 의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은 감소하나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및 이월체납액 감소 등으로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변상금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약자와의 동행 사업 등 국·시비 분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증가됨.
-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과 폐기물 관련 등 환경 예산이 증대되었음. 취약계층, 가중·여성, 보훈 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였음. 아울러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음. 예비비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음.

-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억478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7,864만2천원 대비 8.00%, 13억2,614만4천원 증가하였음.
- 세입 증가 요인은 주로 건강동행과 시·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보건소 세입예산의 99.00% (177억2,640만7천원)로 전년 대비 8.63% 증가하였음.
- 이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시 등으로 보조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 문제를 정책화하여 추진하면서 모자보건 사업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보건소 추진 사업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추진하고 있어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높음. 주로 건강동행과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은 국민의 보건복지 욕구를 증가시키지만 사업은 의존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원 감소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

되고 있음. 향후에는 구민 수요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그 밖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1층 건강나눔카페 임대료 수입으로 코로나 엔데믹으로 영업활동이 재개되어 세입이 발생하였음.
- 한편,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입예산의 중복계상에 따른 행정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야 하겠음.
- **202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287억4,431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억3,757만4천원 대비 5.92%, 16억674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건행정과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및 ‘에이즈예방관리’, ‘국가결핵관리사업’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 위생과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츄허용업소 지도점검(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고,
- 건강동행과는 ‘모자보건관리(8억186만7천원 증액)’, ‘예방접종사업(2억1,229만4천원 증액)’,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4억4,000만5천원 증액)’ 등의 사업 증액으로 전체 예산이 증가됨.
- 의약과는 ‘서간보건지소운영’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전년도 시설비 등의 보강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은 감소됨.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서비스’ 사업의 통합민원기간제인건비와 키오스크 구매(3,053만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건소 접근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사업임.
- 통합민원기간제인건비 편성은 예년도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원응대 개선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고, 키오스크 구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³⁾을 근거로 베리어프리⁴⁾ 정책에 따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건소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이 기대됨.
-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건강도시협의회와 관련하여 부문 간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건강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강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중점사업 목표관리로 사업 내실화를 도모함.
- 주요 증액으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국외연수로 국외여비 662만원을 증액 편성함.
- ‘정신보건사업’은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고위험군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전년 대비 2,403만원 증액 편성함.

3)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배리어 프리 (barrier-free)는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

- 본 사업은 구민 정신건강 복지 차원의 사업 추진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나, 대부분 매칭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아울러, 상기 사업의 위탁업체인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예산은 민간 위탁금으로 센터의 인력 및 운영비에 국한된 예산임.
-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에서는 주체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전반적인 센터의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겠음.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 발표('23.12.05. 보건복지부)로 인해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추진되었음.
- 민간 심리상담 기관에서 총 8회(3개월 이내)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고,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통지 및 인력을 등록 및 관리하고, 위탁사업자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서비스 비용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업임. 보조금 비율(국비 50%, 시비 25%, 구비25%)에 따라 2025년에는 7억9,500만원을 편성 요구함.
-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⁵⁾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⁶⁾은

5)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이를 인식한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술한 대상자들의 정신과 진입장벽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안내 방안을 사업 추진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에이즈예방관리’ 및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그 확산세에 대해 언론⁷⁾에서 경고하고 있으므로, 감염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겠음.
 - 【위생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억4,9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증액 편성 내용 중에는 전년도 추경 편성 심사에 다뤘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분이 포함되어 있음.
- 참고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에 이를 반영하였음.

<표 1.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집행잔액 원인별 금액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620,595	619,565	1,030
일반보전금	101,680	118,200	16,52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처우개선비 145,000원*12명*12회	20,880	0	20,880

6) 정신과 진입장벽: 제도적 불이익(34%),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7) “젊은 층 에이즈 확산 심각한데도... 힘 못 쓰는 당국 예방교육·홍보” (2024.4.9. 국민일보)
“국내 에이즈 감염 60%는 ‘동성끼리’...10·20대 ‘위험수위’”(2018.8.25., 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⁸⁾에 따르면 관련 기금으로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건강동행과】 ‘햇빛센터 운영’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 보건소 2층을 ‘햇빛센터’로 설치하여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7월 개관 이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전년 대비 3,647만8천원을 증액한 1억2064만9천원을 편성함.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및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시비 매칭 사업(시65%, 구35%)임.
- 2023년 7월 1일부터 기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난임부부 지원 대상이 확대 적용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236만2천원을 증액한 22억2,481만7천원을 편성함.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 난자 사용시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2024년 4월부터 시행하였음. 국비(기금), 시비

8)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5:5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1,164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음.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임.
- 위 사업은 2013년 5월 국정과제로 「고위험임산부 별도진료비 지원」 추진 확정됨⁹⁾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매칭 사업 가내시액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5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함.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이며 2025년도 3억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부모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62-1(임산과 출산 맞춤형 지원)로 확정되어 2015년 10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임.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산모의 질병·사망·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비용 지급을 내용으로 하며 전년 대비 2억670만원을 증액한 4억2,4030만원을 편성하였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

9) 201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는 시비 매칭 사업임. 산후도우미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하고 있음.

- 상기 사업은 2006년 4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매칭 사업 가내시액 증가로 1억2,7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난임 예방을 위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 등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기본방향」 발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3.3.28.)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임력 확인을 위한 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건소는 1억9976만1천원을 신규 편성함.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신부터 출산 후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 가정방문 관리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보건소에서는 지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심사하였고, 2025년에는 본예산으로 2,151만6천원이 신규 편성하였음.
- ‘자체예방접종사업’은 취약계층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 취약계층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2024

년 4월부터 취약계층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까지 추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억3,018만5천원 감액한 1,9859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한 매칭 사업임. 전년 대비 매칭 사업 가내시액 증가로 4억 4,000만5천원을 증액한 12억8,808만5천원을 편성함.

- 【의약과】 ‘아현보건지소 운영’은 공공운영비의 관리비 및 전기요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총 △1,99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서강보건지소운영’은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고, 국립재활원 CBR교육 관련 비용 및 재활협의체 심의위원 참석 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3,48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눈에 띄고,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매우 높아서 의무적 구비 부담 역시 큰 편임. 지속적인 구비 부담은 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과 주민편의를 위한 자체 사업 추진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가속되었고 이로 인해 국·시비 기준 보조율의 범위가 탄력적이지 않고 보조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가 및 서울시 사업과 공모 사업 추진을 신중히 해야 하겠음.
- 특히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지방이양 성향인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변경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움직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비율 인하는 물론, 타당성이 낮은 매칭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보건사업이 구민 모두에게 전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사업별 홍보물에 의지한 마케팅보다는 부서별 통합 홍보계획을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을 강화하고 구민의 식품영양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금 수입계획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고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원금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2,237만원 증액 편성함.
- 기금 지출계획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비 본예산 편성으로 삭제 및 여유자금 예치로 예치금 감소로 전년 대비

△3억4,719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 용자금 대여 사업은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용자로 1억8,000만원(3,000만원×6개소),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용자로 2억5,000만원(5,000만원×5개소), 화장실개선자금 용자로 2,000만원(1,000만원×2개소)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작년과 지출예산 편성이 동일한 내용임.
- 예산과 별도로 조성되는 기금의 경우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며 재정통제가 엄격하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반회계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음. 특히 사업성기금은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된 경우 선심성 지출 여부, 용자성기금은 기금 용자에 대한 회수 여부 등 사후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¹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10) 양지숙(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의 위험요인 분석:기금 감사 및 성과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4).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